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0-학인-00009 학교폭력 처리절차 등에서의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 母)

피 해 자 □□□(○○○○학교 학생)

피신청인 1. ◎◎◎, 2.◇◇◇(○○○○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 1.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 와 같은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처리 절차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휴식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주장 중 신청요지 2), 3), 4)는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20. 11. 25.(수)

나. 신 청 인 : ○○○(피해자 母)

다. 피 해 자 : □□□(○○○○학교 학생)

라. 피신청인 : 1. ◎◎◎, 2.◇◇◇(○○○○학교 교사)

마. 신청요지

1) 2020 9. 16.(수)경 피신청인 1.은 피해자를 4교시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2) 피신청인 1.은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을 2020-3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유출하였다.

3) 피신청인 2.는 피해자가 교사를 학교폭력사안(2020-5호)으로 접수한 보복으로 기숙사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사유로 선도위원회를 열고, 학교 교내봉사 5일의 처분을 내렸다.

4) 피신청인 2.는 피해자가 접수한 위 학교폭력사안(2020-5호) 조사서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신청요지 1) 관련

3교시 종이 울리자마자 내려가서 피해자를 직접 데려와, 학교폭력사안(2020-3호)에 대해 묻고 경위설명서 작성을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작성을 끝내지 못했고,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교실에서 수업 받고 다음 시간에 올래, 어쩔래? ” 하고 묻자, 학생이 “계속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생에게 “그러면 네가 쓰

고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다.

경위서 작성시간은 30분 정도 소요 됐던 것 같고,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작성을 마쳤다.

학생의 휴식권도 있고 학습권도 있어 (수업시간을) 피해서 하라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2) 신청요지 2) 관련

학교폭력 사안(2020-03호)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최초로 찾아오신 것은 11월 14일(토) 오후 5시이며,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오셨다. 그 전에는 그분하고 통화만 몇 번 했다.

3) 신청요지 3) 관련

피해자가 10월 17일 기숙사내 흡연 문제로 (기숙사를) 나가게 됐는데, 피해학생만 가혹하게 처분하지 않았다. 기숙사내 흡연은 똑같이 처벌했고, 흡연 사례가 바로 전에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과 비교해도 똑 같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4) 신청요지 4) 관련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쓰는 것은 사실확인서이고, 사안조사보고서는 학생이 아닌 교사가 작성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사안조사보고서는 비공개 자료여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2020. 9. 16.(수) 피신청인 1.은 3교시 이후 쉬는 시간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위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경위 설명서를 작성해야 해서 4교시 수업시간 중 30여 분 정도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

3)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학습권 침해 관련 (신청요지 1)항)

위 인정사실 1), 2), 3)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2020 9. 16.(수)경 4교시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30여분 가량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피신청인 1.은 피해자에게 수업에 들어갔다 오겠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경위서를 계속 쓰겠다고 해서, 4교시에 계속 경위서를 쓰게 하였다며 피해자가 4교시 수업 중 30여 분의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의「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8)」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경우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

만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2) 개인정보유출 관련(신청요지 2) 항)

학교폭력(2020-03호)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2020. 11. 14.(토)경 이었던 것으로 보아 사전에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사전(2020. 9.경)에 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의 내용을 위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학부모에게 전화로 알린 점,[1] ○○○학생이 학교폭력사안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통화하여 사과한 점[2], 2020. 9. 17. 학교폭력사안 내용을 학교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점[3] 등으로 보아 2020. 9. 18.경 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들(피해, 가해 등)을 통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경위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1.이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유출하여 피해학생 학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3)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보복 관련(신청요지 3) 항)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기숙사내 흡연을 하였다는 사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학교 교내봉사 5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교사를 학

1), 2), 3) 피신청인 1.이 제출한 학교폭력사안(2020-3호) 자료 중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경위서 등에 따르면, 정◎◎ 학생이 학교폭력사안(2020-3호)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사과한 사실과 2020. 9. 17.에 해당 학교폭력사안 내용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교폭력사안(2020-5호)으로 접수한 것에 대한 보복이며, 해당 학생의 징계 절차 등에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학교「생활규정」제54조와 별표 선도 기준 ○○항에 따르면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에게 주의 또는 학교봉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숙사생 생활규정」위반행위별 벌점 부과기준 ○항은 음주 흡연 또는 해당 물품의 소지의 경우 퇴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학교에서는 피해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흡연문제로 2020. 6. 23., 2020. 10. 8. 등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7일, 교내봉사 5일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아닌 것으로 징계를 하였고, 과도한 징계를 하여 학교에서 보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교내봉사 5일의 징계는 통상적인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또는 징계처분으로 피해자의 징계절차 등에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4) 학교폭력 관련자의 방어권 미보장 관련(신청요지 4) 항)

피해자는 피신청인 2.가 학교폭력사안(2020-5호) 조사서를 사실확인 절차(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의 서명 처리)를 거치지 않아, 피해자의 징계 절차 등에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신청인 2.는 학교폭력사안 담당자가 아니고, 피신청인 1.이 학교폭력사안 담당자로 피신청인 2.는 해당 신청요지와 관련이 없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접수번호 2020-05호 관련 사안조사보고서와

확인서는 2020. 10. 14.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 서명한 확인서 1부, 목격 학생들이 자필 작성하여 서명한 확인서 2부, 가해추정 학생이 자필 작성하여 서명한 학교폭력 확인서 1부 등 총 4부의 확인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안조사보고서는 학교폭력 담당자(교사)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가피해 학생들, 관련 학생들, 학부모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하거나 서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 인권침해 여부로 살펴볼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생들(피해자)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 학생들의 보호자가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 소명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학생들의 자기 방어권(또는 소명의 기회) 보장과 관련이 있다. 신청인은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학부모의 참여 또는 확인 서명 등이 학생의 방어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는데 이는 보호자로서 학생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검토 또는 확인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또는 학생의 알권리, 방어권 보호 등 중요한 사항이다. 이 사안에서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알권리, 방어권 미보장 등과 관련이 없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의심 행위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확인하

는데, 이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학부모의 확인 서명이 없다. 확인서는 해당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발생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 합의, 허락 등이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학생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확인서를 다른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강제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인서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확인(서명) 등은 확인서의 특성,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것으로 해당 학생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안조사서를 비롯하여 확인서에 학부모의 서명이 없어, 학생의 방어권(징계 절차 등에서의 권리) 보장되지 않았다는 학생인권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소결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정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생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한 상담 등 학생과 상담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담 또는 조사는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면 학습권 침해,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에 실시하면 휴식권 침해, 방과후 실시하면 학습선택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학교에서 상담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해당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29.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